

2025년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자원사업」 모집 공고 (재공고)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인천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 5. 2.

인천관광공사 사장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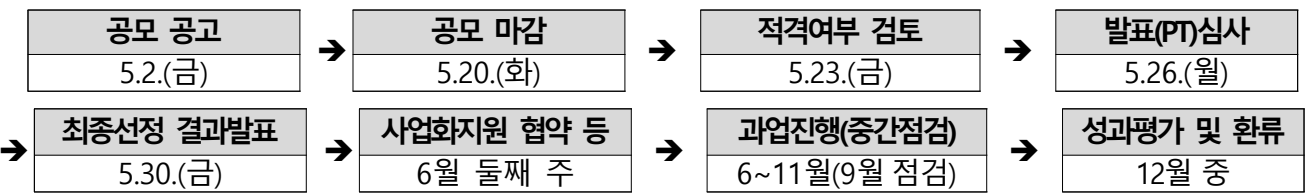
- 공 모 명 : 2025년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 공모기간 : 2025. 5. 2.(금) ~ 5. 20.(화) 18시까지
- 공모내용 : 주요 관광 인프라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용화 가능한 사업·기술 선발
- 공모대상 : 협력파트너(실증자원 운영기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혁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인천항만공사),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 기준

*** 타 지역의 경우, 협약 60일 이내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의 인천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공모일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지원 : 1개사 / 2천만원 내외

선정 수	지원금	자부담(필수)	협업기간
1개사	2천만원 내외	지원금의 20% 이상	협약체결일 ~ '25년 12월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테스트베드, 사업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별도평가), 네트워킹 등

II

공모 상세내용

○ 모집유형

구분	내용	지원금
문제해결형	■ 협력파트너의 현안해결을 위한 수요기술을 선택하여 기업의 기술·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증사업 제안 - 인천항크루즈터미널 : 모항크루즈 확대에 따른 고객편의 서비스 개선 (1) 수하물이동 컨베이어벨트 (2) 우천시 차단이 가능한 포터블 보행통로	2천만원 이내

* 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자격 : 고객 편의를 위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자

- 고객편의 관련 상품(서비스) 및 관광콘텐츠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기업 (업종무관)**
- 공모마감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인천 소재** 기업체
- **타 지역 업체**의 경우, 협약 후 60일 이내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체

○ 선정혜택 : 사업화지원금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

○ 사업화지원금 지원 방법

1. 사업화지원금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협약 기간 내에만 지원함
2. 사업화지원금은 100% 사후 정산(**자부담 20% 이상 필수**)으로 하며,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최종 지급 (**중간정산 진행 예정**)
3. 사업화지원금은 최종 선정 후 별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하며,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예산 집행 가능(운영기관과 협의 후 집행)
4. 사업화지원금은 인천관광공사(인천광역시)에서 지원
5. 기업별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협약 체결 예정

III

심사계획(안)

○ 발표심사

- 심사일시: 2025. 5. 26.(월) 예정 *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심사장소: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컨퍼런스 룸 (예정)
- 심사항목: 사업의 우수성(40), 상용화가능성(50), 기대효과(10)
- 심사방식: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평가
- 선정 수 : 1개사 선정
- 발표안내: 기업 당 20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자유양식 (PDF로 제출)
 - * 발표자료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발표시간(15분)에 맞춰 분량 조절 요망
- 결과발표일: 2025. 5. 30.(금) (예정)

○ 가점항목

구분	가점	가점 기준
청년 참여 가점	1	기업의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경우

○ 심사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사업의 우수성 (40)	혁신성	·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정도 (기술, 서비스, 문제개선 등)	10
	우수성	· 기존 기술 대비 성능 수준 및 기술 개발 실적	10
	적합성	· 자원 및 사업(아이템)을 통한 관광활성화 또는 현안해결의 적합성	10
	완성도	· 사업 완성도 및 상용화 전망	10
상용화 가능성 (50)	현안해결 가능성	· 사업 아이템을 통한 관광활성화 또는 현안해결 가능성	25
	상용화 가능성	· 사업 아이템 실적 및 구성원 역량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25
기대효과 (10)		· 상용화에 따른 이용객 및 시설에 나타날 기대효과	10

○ 심사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 미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종 선정 후에도 취소함
3. 2차 발표심사 시 사전 위임장 제출 없이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인천관광공사는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5.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의 고유 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신청 제외 대상 ※ 하기에 해당될 경우,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1.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재(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전 단계 지원,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받은 기업은 예외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3.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대표자가 개인회생 신청자이거나 휴업, 파업, 파산한 기업
5.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중복수혜 해당자(기업)

- ① 2025년도 기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사업 아이템
 - ②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스타트업, 협업프로젝트 등)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
 - ③ 실증자원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
- #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수혜 이력만 중복수혜로 해당되며, 입주지원, 네트워킹 지원, 상담·컨설팅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IV

접수방법

- 공 고 처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모안내 게시판
 - * 창업관련 카페, 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 등 홍보 예정
- 접수기간 : 5. 20.(화) 18시까지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ourbiz.contact@gmail.com)
-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출 (한글자료의 경우 별도 요청)

번호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1	작성서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1] 참고
2		참가신청서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2] 참고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3] 참고
4		중복수혜 방지 약약서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4] 참고
5		청렴이행서약서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5] 참고
6		사업계획서	“신청서류(서식)” 內 [별지서식.6] 참고
7		발표자료	가로세로 16:9 비율 / PDF로 제출(자유양식)
8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 나오게 발급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10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발급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
11		중소기업확인서	
[가점] 증빙 제출 서류			
청년참여 가점 (+1점)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공모 관련 문의 : 공모 일정, 접수, 제출서류 문의 등
 - ☎ 2025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운영 사무국 (070-8015-6350)
 -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최보아 과장 (032-724-9128)
- 사업 관련 문의 : 상품·서비스 문의, 시설 현황, 규모, 가능성 체크 등
 - ☎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인천항만공사 최유나 대리 (032-890-8233)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참가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2. 상기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 외 기타 서류 미 인정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4. 제출서류 기재 착오·누락·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
5.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미 작성하여 제출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7. 신청 마감일(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되니 신청 마감일 1~2일 전 제출 권장

V

기타안내

○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기업별 사업협약금액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중구문화재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능.
3. 사업협약 체결 이후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비 반환 및 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응모 및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공모전 사업담당자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지원자(기업)는 반드시 본 공모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모해야 함.
※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tourbiz.or.kr>) 참고

○ 청렴이행 준수

- ▶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 직원들은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공모·선정, 협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별첨 1-1

지원금 사용 및 지급 관련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지원금 및 자부담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사후정산으로 지급 나.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법인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을 필수 제출해야하며, 적격증빙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함.(사전문의요망) * 현금거래(현금영수증)는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카드사용하고 개인카드 영수증 사용을 불인정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집행비용은 적격증빙, 이체확인증, 성과품(결과보고 등)을 제출해야 함 라. 협약 후 안내하는 지출증빙 양식에 준수하여 결과보고서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마.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전담담당자가 진행해야 함
지원금 정산	가. 지원금의 정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증빙만 인정 나. 공사는 기업의 정산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적정금액으로 감액조정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허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라. 자부담 집행내역이 확인이 완료되면, 공사 지원금 정산이 가능함
성과제출	참여기업은 사업화 기간 내 추진성과를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금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집행불가 (불인정) 항목	※ <u>아래의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사업화지원금으로 집행이 불가</u>하며,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화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일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집행 가능 - (단순 인쇄제작물) 브로슈어, 서류봉투, 명함 등 인쇄 제작물 불가 - (구조·시설물) 안내표지판, 게시판, 우체통 등의 구조물 불가 - (단순 프로그램 구입) 윈도우, 어도비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불가 - (사무기기) 사무용품, 사무기기, 복합기, 기타 전산장비 구입 불가 - (구독형 서비스) 월별 구독료 구매 불가 (단, 협약기간 내 부과되는 구독료는 집행 가능) - (단순광고·홍보)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등 단발성 디지털 광고 불가

별첨 1-2

지원금 편성 및 집행 지침서

비 목		내 용
공통		※ 각 비목당 사업화지원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사업화지원금 2,000만원 중, 외주용역비로 최대 1,400만원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음 ※ 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인건비	기준	- 정의 : 본 사업화를 위하여 신규 고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한 신규인력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인건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집행 가능
	유의사항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불가 ※ 운영기관이 고용된 인력의 업무가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화 지원금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증빙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이체확인증
외주용역비	기준	- 정의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조사,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금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금금보증보험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선금금은 계약금액(공급가액 기준)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 2,000만원 이상(공급가액)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함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 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비 목	내 용
지급 수수료	기준 • 정의 :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① 등록비 : 사업화를 위한 S/W 및 기술 등록비 ② 가입비 : 사업화를 위한 외부 기술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입비 (일회성) ③ 구독료 : 사업화를 위한 외부 기술 및 S/W 사용 시, 부과되는 월별 사용료 ④ 임대비 : 외부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임대할 때, 계약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대료 ⑤ 기술보호비 : 기술 임차(갱신)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 ⑥ 저작권료 : 기술 또는 시스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저작권 수수료 ⑦ 시험인증비 :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⑧ 기자재임차비 :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⑨ 운반비,보험료,보관료 : 기업 아이템의 운반, 수출 시에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⑩ 기타 수수료 : ①~⑨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수수료
	유의사항 ※ 시험인증비 : 제품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이 완료되어야 한다. ※ 기자재임차비 : ①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② 기자재 임차비는 협약기간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③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④ 비즈니스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의 공유 사무공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시 집행가능하며, 이외의 '전대차 계약'은 집행이 불가함 ※ 모든 지급수수료는 협약기간 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예시) 협약기간이 '25. 5. 1. ~ 11. 30.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11. 30.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협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사전결제 불가)
	증빙 ※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등록비, 가입비, 구독료, 임대비 : 계약서 또는 가입서류 •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 평가 증빙서류 및 재산거래 플랫폼 이용 확인서류 •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 인증서 또는 신청서, 컨설팅일지(필요시) • 기자재임차비 : 임차 계약서,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 세무·회계 : 계약서 • 기술보호 : 계약서, 기술 임치증 또는 최신본 임치증

비 목		내 용
재 료 비	기 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 의 사 항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시제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 비품 등은 유형자산취득비로 구매
	증 빙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유 형 자 산 취 득 비	기 준	• 정의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 의 사 항	※ 협약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S/W 구입비 포함)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단,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운영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 단,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 불가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 증폭기 등)도 유형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집행 ※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임차(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집행 불가하며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항목으로 집행
	증 빙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무 형 자 산 취 득 비	기 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기업 본인(법인은 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비 목		내 용
	유의사항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 가능(단, 대리인 성공보수로 집행 불가) ※ 협약종료 이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증빙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기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출원·등록 건임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견적서(변리사 위임 시), 출원사실증명원(출원 경우), 지재권 등록증(등록 경우),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 등 • (우선심사청구 경우)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 접수증 / (선행기술조사 의뢰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
증빙 참고사항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이상(공급가액 기준)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함 • 세금계산서 집행 증빙서류 제출 시 입금확인증 추가 제출 필요 • 운영기관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기 제출서류에 보강을 요청할 수 있음

별첨 2-4

수요기술 정의서 및 실증자원 (인천항크루즈터미널)

□ 수요기술 정의서 (1) :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수하물 자동화 서비스

구 분	내 용
수요기술명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수하물 자동화 서비스
관련분야	수하물 이동 자동화
실증자원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현안문제	· 인천항 모항 크루즈 확대에 따른 수하물 수송서비스 개선 필요 - 인천항 크루즈여객 운영 관련, 한 항차당 처리 해야하는 캐리어 개수는 약 8천개~1만개로, 빠른 수하물 처리가 여객만족도 향상과 직결되는 상황 - (문제점) 크루즈 터미널 내, 출국 수속을 위한 수하물을 X-RAY로 운반하는 단순작업을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저속도, 저효율 → 수하물 검사 X-RAY 전, 후 컨베이어벨트 설치로 수하물 처리속도 향상을 통한 터미널 서비스 운영 전반 개선 필요
수요기술	○ 수하물 검사 X-RAY 전, 후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통한 수하물 처리속도 향상 * 대략적인 규격은 2m *10m 이나 업체 선정 및 운영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 예시 : 서울역 환승통로 컨베이어벨트 설치

□ 수요기술 정의서 (2) :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여객 통행로 개선

구 분	내 용
수요기술명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여객 통행로 개선
관련분야	이동식 보행로 / 우천차단 통행로
실증자원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현안문제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여객수속구간(수하물 처리) 야외배치로 우천시 여객통행로 신규확보 필요 → 이동경로(수하물~터미널진입) 고정장치 설치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철수가 용이한 포터블 제품 제작을 통한 우천시 여객지원시설 운영 필요
수요기술	○ 우천차단이 가능한 포터블 보행통로 제작 * 대략적인 규격은 5m *50m 이나 업체 선정 및 운영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 예시 : 통행로 우천차단 지붕예시

□ 실증자원

실증 자원	■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16 (국제항만대로 438)
신축 년도	■ 2019
면적	■ 전체 연면적 7,364.38m²
소유 주체	■ 인천항만공사
운영 주체	■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수용 인원	■ 항차당 탑승인원 5천여 명
용도	■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을 위한 크루즈 전용 여객터미널
특이 사항	■
전경 (이미지)	 